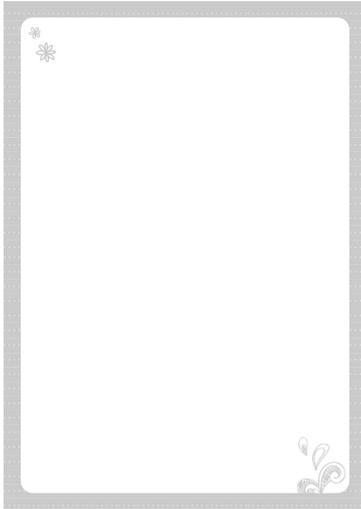




목 차

| | |
|------------------------|----|
| ☑ 2023학년도 시정표 | 1 |
| ☑ 출결 및 체험학습 안내 | 1 |
| ☑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 4 |
|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5 |
| ☑ 교육복지사업 안내 | 9 |
| ☑ 도담도담 상담실 이용 안내 | 10 |
| ☑ 감염병 예방 안내 | 11 |
| ☑ 학부모 교통안전도우미 운영 | 12 |
| ☑ 교실배치도 | 14 |
| ☑ 청탁금지법 | 15 |
| ☑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 17 |
| ☑ 학교폭력 예방교육 | 18 |
| ☑ 성폭력 예방교육 | 21 |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24 |
|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 26 |
| ☑ 인권교육 | 27 |
| ☑ 교권보호교육 | 29 |
| ☑ 교원능력개발평가 | 30 |
| ☑ 성장평가제 | 31 |
| ☑ 선행학습금지법 | 33 |





2023학년도 시정표

| 1, 2학년 | | 3, 4학년 | | 5, 6학년 | |
|-------------|--|--------|------------------------------|--------|------------------------------|
| 등교시간 | 08:35~08:55 | 등교시간 | 08:35~08:55 | 등교시간 | 08:35~08:55 |
| 1교시 | 09:00~09:40 | 1교시 | 09:00~09:40 | 1교시 | 09:00~09:40 |
| 2교시 | 09:50~10:30 | 2교시 | 09:50~10:30 | 2교시 | 09:50~10:30 |
| 3교시 | 10:40~11:20 | 3교시 | 10:40~11:20 | 3교시 | 10:40~11:20 |
| 점심시간 | 11:20~12:20 | 4교시 | 11:30~12:10 | 4교시 | 11:30~12:10 |
| 4교시 | 12:20~13:00 | 점심시간 | 12:10~13:10 | 5교시 | 12:20~13:00 |
| 5교시 | 13:10~13:50 | 5교시 | 13:10~13:50 | 점심시간 | 13:00~14:00 |
| 하교시간 | 1학년 ㉠㉡4교시 13:00 ㉢(수)㉣5교시 13:50 | 6교시 | 14:00~14:40 | 6교시 | 14:00~14:40 |
| | 2학년 ㉠4교시 13:00 ㉢(수)㉣5교시 13:50 *1학기만 교육과정 조정으로 ㉣5교시 | 하교시간 | ㉠(수)㉢5교시 13:50 ㉣6교시 14:40 | 하교시간 | ㉣5교시 13:40 ㉠(수)㉢6교시 14:40 |
| 방과후 교육활동 | 월(금) 13:10 ~ 15:30 | | 화(수)목 14:00 ~ 16:20 | | |



출결 및 체험학습 안내

| 구분 | 내용 | 제출서류 | 출결처리 |
|-------------|--|---|--|
| 1. 질병 결석 | 질병으로 인한 2일 이내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신고서 | 결석처리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사유 증빙용이며, 출석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 | 질병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의 결석 (법정감염병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 |
| | 기저질환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등) 등교시간대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함 | |
| | 법정감염병 및 기타 감염성이 강한 질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선생님께 사전연락 발병시 즉시 등교중지하고 완치 후 결석 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완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출석인정 |

| | | | | | |
|----------------------|----|-----------------|----|--------------------------------|--|
| 2. 경조사 결석 |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출석인정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 결석신고서 •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증빙서류 | |
|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 |
|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
| |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3 | |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 | |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 | |

| | | | |
|-----------|--|--|------|
| 3. 미인정 결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 학습으로 승인 불가) 여러 사유로 결석 발생 시 각종 증빙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석신고서 (담임확인서 포함) | 결석처리 |
| 4. 기타 결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임 교사가 직접 내부기안 •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학부모 확인서 첨부하여 담임 내부결재 | 결석처리 |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 안내

|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차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3일 차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4일 차부터 :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 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 기간)도 가능 |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는 1일 차, 2일 차 **매일 제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결석 또는 미인정결석** 처리
- (가정학습)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2023학년도 허용일수는 30일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30일 가능) ※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증빙자료>>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번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 |

| 구분 | 내 용 | 제출서류 | 출결처리 |
|--------|--|--|---|
| 교외체험학습 | 가족과 함께 하는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가족 동반 여행 등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음.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교외체험학습 일수와 가정학습 일수를 합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외체험학습 -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가정학습 - 당일 오전 9시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 기간만 인정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 최종 허가 여부 통보 문자 ”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 출석인정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은 당일 오전 9시까지 인정 (재량휴업일, 공휴일 및 토·일은 제외) |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

- ☑ 결석계 양식이 변경되어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진급 및 졸업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1 지원 목적

- 가.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및 학습 결손 해소
- 나. 학습준비물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시간적 부담 경감
- 다. 교육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활동 도모

2 지원 방침

-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학습준비물을 구입 및 지원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 나. 기본학용품(공책, 연필, 지우개 등)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여 필요시 학생에게 제공한다.
- 다. 일반학생 1인당 지원액은 4만원 이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다.
- 라.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여 사용 학년별, 교과별, 단원별, 차시별 목록을 작성하여 준비물 물품을 선정한다.
- 마. 교육과정에 맞춰 적기에 학습준비물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연3회로 나누어 구입함으로써 구입 및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 구입횟수 | 구입시기 | 구입 사유 |
|------|-------|----------------------------------|
| 1회차 | 3월초 | 1학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준비물 구입 및 지원 |
| 2회차 | 7월말 | 2학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준비물 구입 및 지원 |
| 3회차 | 9~11월 | 2학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추가 학습준비물 구입 및 지원 |

3 세부추진계획

- 가. 학습준비물 지원 품목 안내
 - 1) 가정에서 중복 구입하지 않도록 학습준비물 지원 품목을 알림장을 통해 안내
- 나. 학습준비물 운영.관리
 - 1) 물자절약에 대한 학생교육을 연 2회 실시(3월, 9월)
 - 2)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사장되는 학습 자료의 대체 활용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
 - 3) 학습준비물을 학습준비물 지원실(학년자료실, 학급)에 보관하여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

4 기대 효과

- 가. 학생의 수업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
- 나. 수업에 대한 학생의 참여도를 높여 학력 향상에 도움
- 다.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준비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 경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1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운영 기간

- 2023년 3월 2일 ~ 2024년 2월 29일
- 1학년은 입학식으로 인하여 3월 3일(금)부터 운영

| 구 분 | 운 영 기 간 | 비 고 |
|-----|-----------------------------|-------------------|
| 1기 | 2023년 3월 2일 ~ 2023년 7월 21일 | 여름 방학식: 7/21(미운영) |
| 2기 | 공사로 인해 여름방학 기간 방과후학교 미운영 | |
| 3기 | 2023년 9월 11일 ~ 2024년 1월 24일 | 종업식: 1/24(미운영) |
| 4기 | 2024년 1월 25일 ~ 2024년 2월 29일 | 방과후 겨울방학: 2/28~29 |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설 프로그램

| 순 | 프로그램명 | 대상 | 수업요일 | 수업반 | 수강료 | 교재 교구 및 재료비 |
|---|-------|---------|---------|----------------|---------|---------------------------|
| 1 | 주산 암산 | 1~6학년 | 월, 수, 금 | 1부(1~2학년) | 27,000원 | 8,000원 (1~1.5개월)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2 | 수학교실 | 1~6학년 | 월, 수, 금 | 1부(1~2학년) | 27,000원 | 8,000원~16,000원 (3~6개월)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3 | 컴퓨터 1 | 1,3,5학년 | 월, 수, 금 | 1부(1학년) | 27,000원 | 8,000원~18,000원 (3~6개월) |
| | | | | 2부(자격증반) | | |
| | | | | 3부(자격증반) | | |
| 4 | 바둑 | 1~6학년 | 수, 금 | 1부(1~2학년, 초급자) | 22,000원 | 13,000원(1~2개월)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5 | 바이올린 | 1~6학년 | 수, 금 | 1부(1~2학년) | 22,000원 | 4,000원~13,000원 (3~6개월)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6 | 배드민턴 | 3~6학년 | 수, 금 | 1부(3~4학년) | 22,000원 | 없음 |
| | | | | 2부(5~6학년) | | |
| | | | | 3부(통합반) | | |
| 7 | 댄스 | 1~6학년 | 월, 화, 목 | 1부(1~2학년) | 27,000원 | 없음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8 | 토탈공예 | 1~6학년 | 월, 화, 목 | 1부(1~2학년) | 27,000원 | 매월 12,000원 이내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9 | 기초영어 | 1~6학년 | 월, 화, 목 | 1부(1~2학년) | 27,000원 | 12,000~21,000 (3개월) |
| | | | | 2부(3~4학년) | | |
| | | | | 3부(5~6학년) | | |

| | | | | | | |
|----|-------|-------------|---------|-----------|---------|---------------------------------|
| 10 | 한 자 | 1~6 학년 | 월, 화, 목 | 1부(1~2학년) | 27,000원 | 12,000원~18,000원 (급수별 1개월~1년)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11 | 컴퓨터 2 | 2,4,6 학년 | 월, 화, 목 | 1부(2학년) | 27,000원 | 8,000원~18,000원 (3~6개월) |
| | | | | 2부(자격증반) | | |
| | | | | 3부(자격증반) | | |
| 12 | 로봇과학 | 1~6 학년 | 화, 목 | 1부(1~2학년) | 22,000원 | 99,000원~132,000원 (4~5개월)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 13 | 미술 | 1~6 학년 | 화, 목 | 1부(1~2학년) | 22,000원 | 매월 10,000원 이내 |
| | | | | 2부(통합반) | | |
| | | | | 3부(통합반) | | |

2 회계관리

가. 수강료 산출 기준

| 수업일수/주 | 수강인원 | 1인당 예상 수강료 (교재 및 재료 구입비 미포함) | 비 고 |
|--------|--------------------|---------------------------------|--|
| 3일 | 3강좌 운영 (최대 69명) | 27,000원 |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교육청 지원금으로 프로그램별 최대 15,000원 지원 예정 |
| 2일 | | 22,000원 | |

나. 환불

- 1)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25일 이후 환불한다.
- 2)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월 단위)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다.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라. 자유수강권 지원

- 1) 지원 목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 2) 지원 방법: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
- 3) 지원 대상 및 순위

| 순위 | 구분 | 내용 |
|----|------------|---|
| 1 | 우선지원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
| 2 | 소득에 따른 지원 |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 3 | 학교장 추천 |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함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 4 | 다자녀 다문화 추천 |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자녀, 다문화 각각 지원 - 다자녀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2순위)의 10% 미만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 ※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 4)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적극적 참여자에게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가능)
- 5)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또는 온라인)에 신청 →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 →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6)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 ▶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 3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 * 추후 프로그램 수강 희망 시 지원 가능

3 >>> 평가

| 평가 분야 | 평가 내용 | 횟수 | 평가자 |
|----------|--|-----------|-----------------|
| 만족도 조사 |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강사 만족도(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 학기별 1회 | 학생 학부모 교사 |
|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간 운영 만족도조사 | 학기별 1회 | 학생 학부모 |
| 자체 점검·평가 |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 학년말 1회 | 업무담당 교사 |



교육복지사업 안내

| 영역 | 세부프로그램 | 사업추진내용(시기, 횟수) | 비고 |
|-----------|---------------|--|----|
| 학생 파악 | 마음 돋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면담 및 가정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욕구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수시 진행 • 대상학생 발굴 및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11~12월): 학년말 담임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및 학생상황 파악 - 신입생 및 신규학생(3~5월): 원클릭, 담임교사 - 동학년 사례회의 진행(5월, 11월) • 신입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실 탐방 프로젝트, 투사검사 실시 | |
| 맞춤형 지원 | 꽃들에게 희망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 개별상담 및 가족상담 • 마음 Talk(특) 그림책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책 테라피 24회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 휴(休)스마트 (3~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및 스마트폰과물입의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 어깨동무 자율봉사동아리 (5~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능기부(인형극, 동화구연, 경로당봉사), 캠페인, 바자회 등 • 집콕놀이 비대면 체험활동(1~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콕요리 활동, 집콕놀이 활동,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등 • 사제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중 학생과 담임교사의 소통과 공감 기회 확대, 6팀 지원 - 방학중 교육복지학생과 교육복지사와 대면 및 비대면 상호작용 • 학교생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육복지대상학생 가정 및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생필품, 위생용품, 병원진료 등 맞춤형지원) | |
| 환경 조성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울타리 교과연계프로젝트(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연계 프로그램: 교과재구성을 통한 교육복지 가치(인성) 교육, 4~8차시 구성, 학년별 또는 학급별 운영 • 행복한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학급 프로그램: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학급 지원 | |
| 운영 지원 | 디딤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회의 진행(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팀 회의: 연중, 사안발생시 수시 - 동학년 사례회의: 2회(5월, 11월) - 교육복지위원회: 2회 • 교육복지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실 운영 (학생 쉼터, 보드게임, 학생면담) - 실내화, 우산 대여 | |

※ 프로그램은 학교 사정과 신청 인원에 따라 변경 운영될 수 있습니다.



도담도담 상담실 이용 안내

1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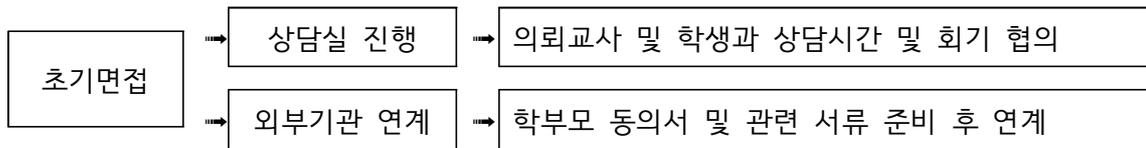
가. 학생 직접 상담 신청

- 상담실 방문 →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일정 조율 → 담임선생님께 싸인 받기

나. 담임교사 상담 의뢰

- 상담 필요 학생 발견 → 학생 보호자에게 상담실 소개 및 **상담 동의** → 전화나 메신저로 의뢰

다. 상담 진행



2 상담 진행시 진행 내용 및 유의사항

- 수업시간 상담, 담임교사 의뢰의 경우 **학부모 동의 필요** (학기초 상담활동 학부모 동의서)
- **상담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수업시간 중으로 미리 시간을 정하고 상담진행.
- 1주에 1회기 씩(40분소요)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진행 회기는 달라질 수 있음(보통 5~10회기)
- 개인상담 종결 후 보호자와 상의하여 **집단 상담 및 외부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음.**

3 심리검사

가. 방법 : 개인상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상담진행 시 필요에 따라 실시.**

나. 종류 : 약식 심리검사 (문장완성검사, HTP검사, 성격검사, 투사검사(그림검사), ADHD(약식/ 관찰자용), 우울/불안검사 등)

3 비밀보장

가. 상담에서의 비밀보장의 원칙

-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학생과의 상담내용은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비밀보장입니다.**
- 위기상담은 사안에 따라 의뢰교사나 관리자에게 **상담 진행사항 및 간단한 상담내용을 알릴 때가 있으나, 이때에는 안내받은 당사자가 꼭 비밀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

-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가능성(자해 및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 범죄와 연루된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등

다.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 학생이 앞으로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있음
- 상담교사와 상담관계를 맺기 시작한 학생들이 더 이상 충분하게 이야기 하지 않거나 거짓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 신뢰관계가 손상되고 자신이 믿었던 상담교사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음



감염병 예방 안내

☑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 ① 병원진료 후 담임선생님께 연락
- ② 가정에서 휴식
- ③ 완치 후 **병명과 격리기간, 감염병 여부** 등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를 학교로 제출 (해당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됨)

☑ 등교중지를 할 수 있는 감염병

- 가. 법정 감염병(1급~4급)과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라고 의사가 진단한 질환
- 나. 학령기에 걸리기 쉬운 감염병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 및 질병 상황 변화 가능)

| 병명 | 증상 | 등교 중지 기간 |
|------------------|----------------------------|----------------------|
| 홍역 |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 발진 후 5일 까지 |
| 수두 |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가려움 |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
| 유행성 이하선염 | 발열, 귀 밑이 부어오름 |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
| 독감(인플루엔자) | 고열, 근육통, 기침, 콧물 등 |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 |
| A형간염 |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복통, 황달 | 감염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2주간 |
| 결핵 | 2주 이상 기침, 가래, 미열, 피로, 식욕부진 | 약물치료 시작 후 2주까지 |
| 유행성 결막염 (비법정감염병) | 충혈, 눈 가려움, 이물감, 눈물 등 | 증상이 사라진 후 2일까지 |



학부모 교통안전도우미 운영

2023학년도 1학기 교통봉사 일정표

2023학년도 상반기

■ 휴업일 · 방학, ■ 공휴일, ■ 행사일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1 (수) ▶삼일절 | 1 (토) ▶토요휴업일 | 1 (월) ★학교장 재량휴업일 | 1 (목) 5-3 | 1 (토) ▶토요휴업일 | 1 (화) |
| 2 (목) 1-4(2022학년도) | 2 (일) | 2 (화) 6-6 | 2 (금) 5-3 | 2 (일) | 2 (수) |
| 3 (금) 1-4(2022학년도) | 3 (월) 6-2 | 3 (수) 6-6 | 3 (토) ▶토요휴업일 | 3 (월) 5-7 | 3 (목) |
| 4 (토) ▶토요휴업일 | 4 (화) 6-2 | 4 (목) 6-7 | 4 (일) | 4 (화) 4-1 | 4 (금) |
| 5 (일) | 5 (수) 6-3 | 5 (금) ▶어린이날 | 5 (월) 5-4 | 5 (수) 4-1 | 5 (토) ▶토요휴업일 |
| 6 (월) 1-4(2022학년도) | 6 (목) 6-3 | 6 (토) ▶토요휴업일 | 6 (화) ▶현충일 | 6 (목) 4-1 | 6 (일) |
| 7 (화) 1-4(2022학년도) | 7 (금) 6-3 | 7 (일) | 7 (수) 5-4 | 7 (금) 4-1 | 7 (월) |
| 8 (수) 1-5(2022학년도) | 8 (토) ▶토요휴업일 | 8 (월) 6-7 | 8 (목) 5-4 | 8 (토) ▶토요휴업일 | 8 (화) |
| 9 (목) 1-5(2022학년도) | 9 (일) | 9 (화) 6-7 | 9 (금) 5-4 | 9 (일) | 9 (수) |
| 10 (금) 1-5(2022학년도) | 10 (월) 6-3 | 10 (수) 6-7 | 10 (토) ▶토요휴업일 | 10 (월) 4-1 | 10 (목) |
| 11 (토) ▶토요휴업일 | 11 (화) 6-3 | 11 (목) 6-7 | 11 (일) | 11 (화) 4-2 | 11 (금) |
| 12 (일) | 12 (수) 6-4 | 12 (금) 5-1 | 12 (월) 5-4 | 12 (수) 4-2 | 12 (토) ▶토요휴업일 |
| 13 (월) 1-5(2022학년도) | 13 (목) 6-4 | 13 (토) ▶토요휴업일 | 13 (화) 5-5 | 13 (목) 4-2 | 13 (일) |
| 14 (화) 1-5(2022학년도) | 14 (금) 6-4 | 14 (일) | 14 (수) 5-5 | 14 (금) 4-2 | 14 (월) |
| 15 (수) 1-6(2022학년도) | 15 (토) ▶토요휴업일 | 15 (월) 5-1 | 15 (목) 5-5 | 15 (토) ▶토요휴업일 | 15 (토) ▶광복절 |
| 16 (목) 1-6(2022학년도) | 16 (일) | 16 (화) 5-1 | 16 (금) 5-5 | 16 (일) | 16 (수) |
| 17 (금) 1-6(2022학년도) | 17 (월) 6-4 | 17 (수) 5-1 | 17 (토) ▶토요휴업일 | 17 (월) 4-2 | 17 (목) |
| 18 (토) ▶토요휴업일 | 18 (화) 6-4 | 18 (목) 5-1 | 18 (일) | 18 (화) 4-3 | 18 (금) |
| 19 (일) | 19 (수) 6-5 | 19 (금) 5-2 | 19 (월) 5-5 | 19 (수) 4-3 | 19 (토) ▶토요휴업일 |
| 20 (월) 1-6 | 20 (목) 6-5 | 20 (토) ▶토요휴업일 | 20 (화) 5-6 | 20 (목) 4-3 | 20 (일) |
| 21 (화) 1-6 | 21 (금) 6-5 | 21 (일) | 21 (수) 5-6 | 21 (금) ▶여름방학식 | 21 (월) |
| 22 (수) 2023학년도 6-1 | 22 (토) ▶토요휴업일 | 22 (월) 5-2 | 22 (목) 5-6 | 22 (토) ▶토요휴업일 | 22 (화) |
| 23 (목) 6-1 | 23 (일) | 23 (화) 5-2 | 23 (금) 5-6 | 23 (일) | 23 (수) |
| 24 (금) 6-1 | 24 (월) 6-5 | 24 (수) 5-2 | 24 (토) ▶토요휴업일 | 24 (월) | 24 (목) |
| 25 (토) ▶토요휴업일 | 25 (화) 6-5 | 25 (목) 5-2 | 25 (일) | 25 (화) | 25 (금) |
| 26 (일) | 26 (수) 6-6 | 26 (금) 5-3 | 26 (월) 5-6 | 26 (수) | 26 (토) ▶토요휴업일 |
| 27 (월) 6-1 | 27 (목) 6-6 | 27 (토) ▶부처님오신날 | 27 (화) 5-7 | 27 (목) | 27 (일) |
| 28 (화) 6-1 | 28 (금) 6-6 | 28 (일) | 28 (수) 5-7 | 28 (금) | 28 (월) |
| 29 (수) 6-2 | 29 (토) ▶토요휴업일 | 29 (월) ▶대체공휴일 | 29 (목) 5-7 | 29 (토) ▶토요휴업일 | 29 (화) |
| 30 (목) 6-2 | 30 (일) | 30 (화) 5-3 | 30 (금) 5-7 | 30 (일) | 30 (수) |
| 31 (금) 6-2 | | 31 (수) 5-3 | | 31 (월) | 31 (목) |

◆1학기 수업일수: 99일 ◆여름방학: 7.22~9.10(51일)

2023학년도 2학기 교통봉사 일정표

2023학년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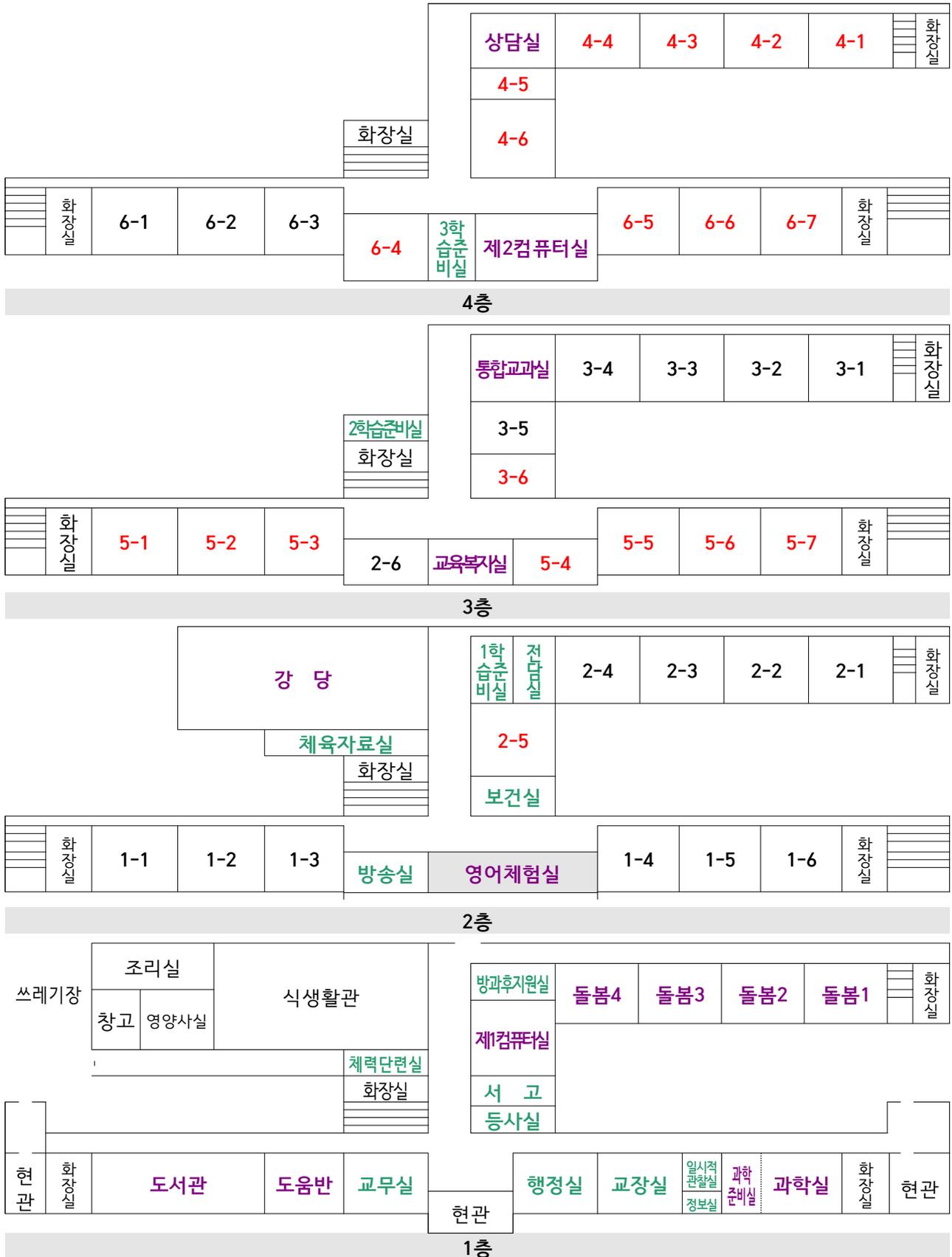
■ 휴업일 · 방학, ■ 공휴일, ■ 행사일

| 9월 | | 10월 | | 11월 | | 12월 | | 1월 | | 2월 | | 3월 | |
|-----------|---------------|-----------|------------|-----------|--------|-----------|--------|-----------|--------------------------|-----------|--------|-----------|----------------|
| 1 (금) | | 1 (일) | | 1 (수) | 3-4 | 1 (금) | 2-2 | 1 (월) | ▶신정 | 1 (목) | | 1 (금) | ▶3.1절 |
| 2 (토) | ▶토요휴업일 | 2 (월) | ★학교장 재량휴업일 | 2 (목) | 3-4 | 2 (토) | ▶토요휴업일 | 2 (화) | 2-6 | 2 (금) | | 2 (토) | 토요휴업일 |
| 3 (일) | | 3 (화) | ▶개천절 | 3 (금) | 3-4 | 3 (일) | | 3 (수) | 2-6 | 3 (토) | ▶토요휴업일 | 3 (일) | |
| 4 (월) | | 4 (수) | 4-6 | 4 (토) | ▶토요휴업일 | 4 (월) | 2-2 | 4 (목) | 2-6 | 4 (일) | | 4 (월) | 1-4(2023학년도) |
| 5 (화) | | 5 (목) | 4-6 | 5 (일) | | 5 (화) | 2-2 | 5 (토) | 1-1 | 5 (월) | | 5 (화) | 1-4(2023학년도) |
| 6 (수) | | 6 (금) | 4-6 | 6 (월) | 3-4 | 6 (수) | 2-3 | 6 (토) | ▶토요휴업일 | 6 (화) | | 6 (수) | 1-5(2023학년도) |
| 7 (목) | | 7 (토) | ▶토요휴업일 | 7 (화) | 3-4 | 7 (목) | 2-3 | 7 (일) | | 7 (수) | | 7 (목) | 1-5(2023학년도) |
| 8 (금) | | 8 (일) | | 8 (수) | 3-5 | 8 (토) | 2-3 | 8 (월) | 1-1 | 8 (목) | | 8 (금) | 1-5(2023학년도) |
| 9 (토) | ▶토요휴업일 | 9 (월) | ▶한글날 | 9 (목) | 3-5 | 9 (토) | ▶토요휴업일 | 9 (화) | 1-1 | 9 (금) | ▶설연휴 | 9 (토) | ▶토요휴업일 |
| 10 (일) | | 10 (화) | 4-6 | 10 (금) | 3-5 | 10 (일) | | 10 (수) | 1-1 | 10 (토) | ▶설연휴 | 10 (일) | |
| 11 (월) | ▶여름개학식 4-3 | 11 (수) | 3-1 | 11 (토) | ▶토요휴업일 | 11 (월) | 2-3 | 11 (목) | 1-2 | 11 (일) | ▶설연휴 | 11 (월) | 1-5(2023학년도) |
| 12 (화) | 4-3 | 12 (목) | 3-1 | 12 (일) | | 12 (화) | 2-3 | 12 (금) | 1-2 | 12 (월) | ▶대체공휴일 | 12 (화) | 1-6(2023학년도) |
| 13 (수) | 4-4 | 13 (금) | 3-1 | 13 (월) | 3-5 | 13 (수) | 2-4 | 13 (토) | ▶토요휴업일 | 13 (화) | | 13 (수) | 1-6(2023학년도) |
| 14 (목) | 4-4 | 14 (토) | ▶토요휴업일 | 14 (화) | 3-5 | 14 (목) | 2-4 | 14 (일) | | 14 (수) | | 14 (목) | 1-6(2023학년도) |
| 15 (금) | 4-4 | 15 (일) | | 15 (수) | 3-6 | 15 (금) | 2-4 | 15 (월) | 1-2 | 15 (목) | | 15 (금) | 1-6(2023학년도) |
| 16 (토) | | 16 (월) | 3-1 | 16 (목) | 3-6 | 16 (토) | ▶토요휴업일 | 16 (화) | 1-2 | 16 (금) | | 16 (토) | ▶토요휴업일 |
| 17 (일) | | 17 (화) | 3-1 | 17 (금) | 3-6 | 17 (일) | | 17 (수) | 1-3 | 17 (토) | ▶토요휴업일 | 17 (일) | |
| 18 (월) | 4-4 | 18 (수) | 3-2 | 18 (토) | ▶토요휴업일 | 18 (월) | 2-4 | 18 (목) | 1-3 | 18 (일) | | 18 (월) | 2024학년도 계획에 따름 |
| 19 (화) | 4-4 | 19 (목) | 3-2 | 19 (일) | | 19 (화) | 2-4 | 19 (금) | 1-3 | 19 (월) | | 19 (화) | |
| 20 (수) | 4-5 | 20 (금) | 3-2 | 20 (월) | 3-6 | 20 (수) | 2-5 | 20 (토) | ▶토요휴업일 | 20 (화) | | 20 (수) | |
| 21 (목) | 4-5 | 21 (토) | ▶토요휴업일 | 21 (화) | 3-6 | 21 (목) | 2-5 | 21 (일) | | 21 (수) | | 21 (목) | |
| 22 (금) | 4-5 | 22 (일) | | 22 (수) | 2-1 | 22 (금) | 2-5 | 22 (월) | 1-3 | 22 (목) | | 22 (금) | |
| 23 (토) | ▶토요휴업일 | 23 (월) | 3-2 | 23 (목) | 2-1 | 23 (토) | ▶토요휴업일 | 23 (화) | 1-4 | 23 (금) | | 23 (토) | ▶토요휴업일 |
| 24 (일) | | 24 (화) | 3-2 | 24 (금) | 2-1 | 24 (일) | | 24 (수) | 1-4 | 24 (토) | ▶토요휴업일 | 24 (일) | |
| 25 (월) | 4-5 | 25 (수) | 3-3 | 25 (토) | ▶토요휴업일 | 25 (월) | ▶기독탄신일 | 25 (목) | ▶졸업식(6학년) ▶중입식(1~5학년) | 25 (일) | | 25 (월) | |
| 26 (화) | 4-5 | 26 (목) | 3-3 | 26 (일) | | 26 (화) | 2-5 | 26 (금) | | 26 (월) | | 26 (화) | |
| 27 (수) | 4-6 | 27 (금) | 3-3 | 27 (월) | 2-1 | 27 (수) | 2-5 | 27 (토) | ▶토요휴업일 | 27 (화) | | 27 (수) | |
| 28 (목) | ▶추석연휴 | 28 (토) | ▶토요휴업일 | 28 (화) | 2-1 | 28 (목) | 2-6 | 28 (일) | | 28 (수) | | 28 (목) | |
| 29 (금) | ▶추석연휴 | 29 (일) | | 29 (수) | 2-2 | 29 (금) | 2-6 | 29 (월) | | 29 (목) | | 29 (금) | |
| 30 (토) | ▶추석연휴 | 30 (월) | 3-3 | 30 (목) | 2-2 | 30 (토) | ▶토요휴업일 | 30 (화) | | | | 30 (토) | ▶토요휴업일 |
| | | 31 (화) | 3-3 | | | 31 (일) | | 31 (수) | | | | 31 (일) | |

◆2학기 수업일수: 91일 ◆연간 수업일수: 190일 ◆겨울방학: 1.26~2.29(35일)



교실 배치도





청탁금지법

1 목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2 적용대상

- ✓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 공직자등: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 ✓ 공무수행사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제재내용

| 제재대상 | 제재의 종류 |
|--|--------------------------------|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제재내용

| 제재대상 | 제재의 종류 |
|--|--------------------------|
|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불법찬조금 및 촌지란?

-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잘못된 관행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함

< 불법찬조금 유형 >

- 자생단체(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체육대회,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각종 관행적 경비 부담 / 자율학습·심화학습반 운영비 / 스승의 날, 명절 등 교직원 선물비 / 학생간식비 등
- 운동부 학부모 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전지훈련, 출전경비 등

불법찬조금 및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용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이기심
-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 모금·집행

불법찬조금 및 촌지는 학교(교사)와 학생을 힘들게 합니다.

- ☑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징계처분 등)

불법찬조금 등 부패 신고

- ☑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jbe.go.kr > 전자민원 > 워크클릭신고센터 > 촌지수수, 불법찬조금신고
- ☑ 부패신고 문의처
 - 불법찬조금신고 안내 전화 예산과 ☎ 063-239-3576
 - 촌지수수신고 안내 전화 교원인사과 ☎ 063-239-3299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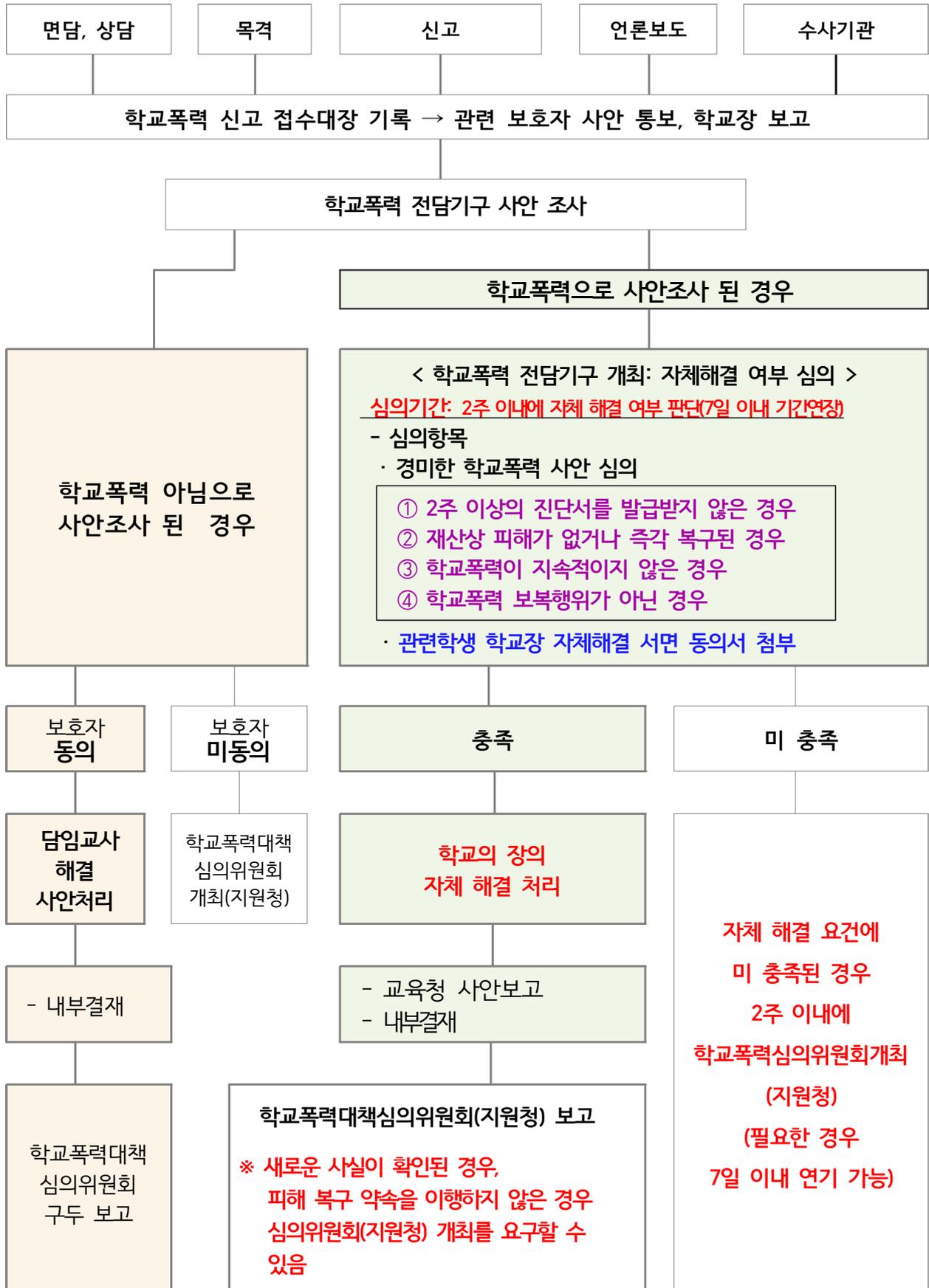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 가.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 나.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다. 금품갈취 : 공갈(둘러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이나 옷, 문구류 등을 요구하는 행위, 돈을 걷어 오라고 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
- 라. 강요 : 강제적 심부름(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마.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 주기, 겁주는 행동, 비웃기 등
- 바.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사.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절차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 자녀에게 모범된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5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 ☑ 117 학교폭력 무료 상담 및 신고



성폭력 예방교육

1 성폭력이란?

- ✓ 성폭력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행위입니다.
- ☑ 성폭력이란 성을 이용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 강간은 물론 성추행, 성희롱, 윤간 뿐 아니라 음란 전화, 성매매, 성기노출, 관음증, 음란통신, 음란물 제작·판매, 강제 매춘, 인신매매 등도 해당되며 성폭력에 대한 행동제약, 공포, 불안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 ☑ 우리 아이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 ☑ 성폭력 피해자는 여자이다.
- ☑ 성폭력은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된다.
- ☑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 ☑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들이다.
- ☑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진실

- ✔ 성희롱도 성폭력이다.
- ✔ 같은 포래끼리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 ✔ 성폭력은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 ✔ 음란물을 통신매체로 유포하는 것도 성폭력이다.
- ✔ 카메라로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면 성폭력이다.

2 성폭력 피해·가해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교육하세요.

♡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 ✔ 암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 ✔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의 표시입니다.
- ✔ 음담패설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 ✔ 음란물이나 음란사이트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 ✔ 말과 행동에서 성적으로 오해할 여운을 보이면 안 됩니다.
- ✔ 이성친구와 자신의 생각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 ✔ 불쾌한 접촉은 장난이라도 즉시 싫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 ✔ 원치 않는 메일이나 쪽지에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어른이 없을 때 이성 친구를 초대하거나 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 ✔ 친구가 요구해도 성폭력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장소에 가거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채팅방에서 사귀는 이성을 직접 만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3 성폭력 피해 예방방법은?

- ✔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이나 이성 친구를 집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이성 친구와 방안에 함께 있을 때는 방문을 열어둡니다.
- ✔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지하실, 차고에 혼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낯선 사람의 과잉 친절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 ✔ 낯선 사람이 차를 태워 준다거나 길을 물을 때, 차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아는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적극적 거부와 반항을 해야 합니다.
- ✔ 친지가 성적인 행동을 요구하면 수치심을 자극하여 설득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하도록 합니다.
- ✔ 수상하고 낯선 이성과 단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혹시 무심코 탔을 때 약간의 의심이라도 들면 즉시 내려야 합니다.
- ✔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상대의 성욕구가 수그러들게 하는 혐오스런 행동을 하여 도망칠 기회를 만들도록 합니다.

4 가정에서의 컴퓨터 음란물 대처방법은?

- ♡ 바른 성교육을 합니다.
성교육이 바르게 되어 있는 청소년은 음란물을 보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력을 갖추게 되므로 음란물의 악영향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 ♡ 컴퓨터를 가족 공용화 합니다.
가족 공용의 공간에 컴퓨터를 놓는다면 자녀가 음란물을 접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 ♡ 늦은 밤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킵니다.
주로 늦은 밤에 온라인을 통해 컴퓨터 음란물이 거래됩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보느라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서 졸기도 합니다.
- ♡ 부모님도 컴퓨터를 배우도록 합니다.
- ♡ 컴퓨터 외에 스포츠나 문화 활동 등의 취미 활동을 권합니다.
- ♡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 ♡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무료설치  청소년인터넷안전망 (www.greeninet.or.kr)

5 성매매 이유와 연결 방법은?

- ✓ 성 매매의 90%가 유흥비와 생활비(용돈) 마련을 위함.
- ✓ 성 매매의 86%가 인터넷을 통한 만남

6 성매매의 확산 요인과 예방 방법은?

- ☑ 청소년 성매매의 확산 요인
 - ✓ 가정불화, 부모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 성폭력 등 충격적 사건경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인터넷의 음란채팅방이 익명의 만남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 ✓ 성 개방풍조와 도덕성의 상실은 성매매를 쉽게 생각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의 유입이 쉬워졌습니다.
 - ✓ 명품구입, 유흥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가 성 매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
 - ✓ 성은 소중한 것이라는 가치관 교육이 필요합니다.
 - ✓ 자녀와 많은 대화를 통해 성적 행동에 대한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 인터넷의 음란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 ✓ 건전한 이성교제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 ✓ 물질만능, 소비심리를 바로잡도록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일련의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증상은 그들이 받은 학대의 구체적 사항들과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가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7 성폭력 피해를 빨리 발견하는 방법은?

- ✓ 불안·공포 반응이 많아졌을 때
- ✓ 학교생활에 갑자기 변화가 올 때: 잦은 지각, 조퇴, 등교거부
- ✓ 특정인과 부모 없이 남게 되는 상황을 계속 회피할 때
- ✓ 과도한 자위행위를 할 때
-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이나 단어를 알고 있을 때
- ✓ 나이보다 어린 행동(치대기, 안기기)을 많이 보일 때
- ✓ 음란채팅을 하고 용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기 시작할 때
- ✓ 보다 직접적인 증거들로는 외성기에서 다량의 분비물과 성기부위 통증 등을 호소할 때

출처: 학생건강정보센터/학교성교육 자료실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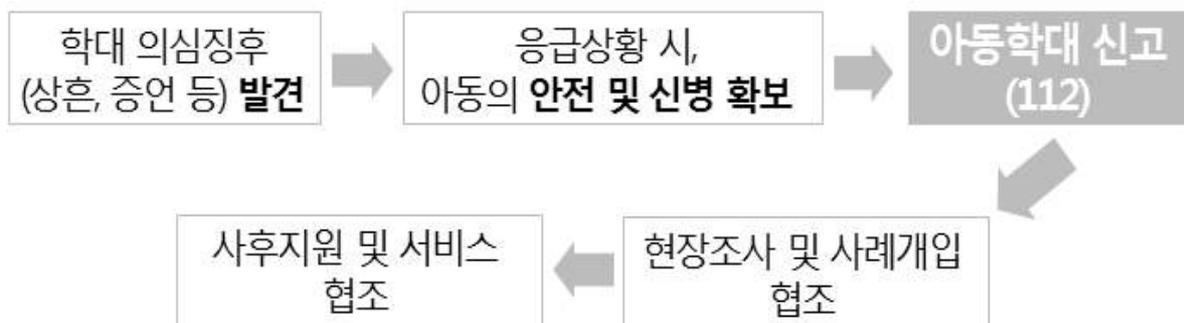
-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여함.

“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3 아동학대 신고

| | |
|--|--|
| <p>언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 <p>무엇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p>※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p> |
| <p>어떻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국번 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4 아동학대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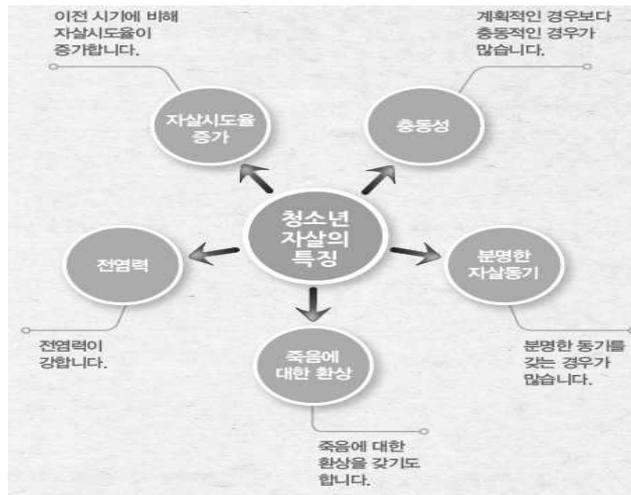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1》》》 청소년기 자살의 특성



2》》》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

- 가.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
- 나. 심리적 내성이 약한 학생
- 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
- 라. 돌아갈 곳이 없는 가출 학생 : 부모이혼, 지나친 간섭이나 과잉보호, 경제적 어려움
- 마. 알코올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학생
- 바. 자살 시도 경험 혹은 자살과 관련된 가족사를 갖고 있는 학생
- 사.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을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음

3》》》 자살의 징후

- 가. 직접적 행동 단서
 - 1)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 2)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3)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 4)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5) 자살 방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검색함
 - 6)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나. 직접적인 언어표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 멀리 떠나고 싶다 • 날아가 버리고 싶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텐데... • 사라져줄게...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
|--|--|

다. 간접적 행동이나 상징적 단서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 감정기복이 심해짐
- 식욕과 수면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 자살시도자의 대부분은 이렇게 자살의 징후를 보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별일 아니겠지, 괜히 그러겠지 하면서 대수롭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 적절한 중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살이란 비극적인 사건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4 자살 징후 발견시 대처 방법

- 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난이나 비판 금지
- 나. 자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기꺼이 같이 해결해보겠다는 의미 전달
- 다. 부모나 친구들에게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하려 노력
- 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심한 경우 입원 고려

5 상담 전화번호

- 가.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24시간)
- 나. 청소년 전화 1388 (24시간)
- 다. 한국 생명의 전화 1588-9191 (24시간)



인권교육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 누군가 아이를 이유 없이 차별할 때 '차별받지 않은 권리'
- ☑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 ☑ 내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말과 글과 행동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표현할 권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걸을 알려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 ☑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 ☑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 ☑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권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리라 믿고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도덕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의 올바른 훈육법

- ✓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도덕적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정직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 부모의 본보기로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말로는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 앞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부모의 도덕적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 ✓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과정을 살펴가며 잘한 점을 칭찬해야 합니다.
결과만 칭찬하면 위험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결과만 칭찬하면 아이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
- ✓ 잘못된 묵인하지 말고 지적하여 고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잘못을 묵인하여 그 잘못이 반복되면 점차 도덕성이 낮아집니다.



지금, 나부터, 모두 함께 실천해요

- 교통 신호 지키기
- 아이의 숙제는 스스로 하도록 하기
- 아이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 주기
- 과정을 살펴가며 칭찬하기
- 잘못된 묵인하지 말고 고치도록 지도하기





교권보호교육

1 >>> 교권의 개념

교권은 협의로는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여기에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한다.

1. 교원의 교육할 권리(교육권)

-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 ☑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 ☑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 ☑ 신분 보장,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권 등을 포함한다.
- ☑ 교사는 일반 공무원보다 강력한 신분상 권리를 보장받는다.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 ☑ 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 ☑ 인간으로서 존엄과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재판청구권, 노동권 등을 포함한다.

2 >>> 교권침해의 개념

- ☑ 교권이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고 침해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 ☑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할 수 있다.

3 >>> 교권침해 유형

| 구분 | 교 권 침 해 유 형 | |
|----|-----------------------|--------------|
| 학생 | ✓ 교원에 대한 폭언 | ✓ 교원에 대한 폭행 |
| | ✓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 ✓ 교원에 대한 성희롱 |
| | ✓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 ✓ 재물 손괴 |
| | ✓ 수업 진행 방해 | ✓ 사이버 매체 폭력 |

| 구분 | 교 권 침 해 유형 |
|-----|------------------------------------|
| 학부모 | ✓ 교원에 대한 폭언 |
| | ✓ 교원에 대한 폭행 |
| | ✓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
| | ✓ 사이버상에 교원을 비방 행위(카톡, 밴드 등) |
| | ✓ 수업형태,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 비하하는 내용 유포 |
| | ✓ 고소·고발 |
| | ✓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

가고 싶은 학교

학교 공동체의 가족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I 목적 및 근거

1 목적

-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 성찰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공교육 내실화

2 근거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교원능력개발평가)
-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II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세부 계획

1 평가 시행 주체

-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주체는 교육감이며, 위임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이 주체가 됨

2 평가 대상 교원

-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하며, 계약제 교원도 포함
 - ➔ 재직 기간 : 당해 학년도 개학일(3.1.)부터 평가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학교 실근무 2개월 미만 교원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평가대상 교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참여자에게 자신의 교육활동 및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교육활동 정보를 제공
 - : 교육활동 소개자료는 평소 개인이 운영 관리하는 교육활동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평가참여자 구성

- ☑ (동료교원평가)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사 등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 ☑ (학생만족도조사) 지도를 받는(은) 학생 모두 참여
 - ➔ 평가 개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자에서 제외
- ☑ (학부모만족도조사) 지도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 평가 개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자에서 제외

4 평가 계획 수립·안내

[학교자율] 학교장은 교육청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단위학교 평가 운영계획을 4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 학교의 '운영계획'은 실제 평가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계획수립 시에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성장평가제

1 목적

- ☑ 배움과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참학력 신장과 삶의 역량 배양
- ☑ 배움과 성장, 과정중심의 평가로 교실수업 및 평가 운영 역량 강화
- ☑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로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2 방침

- 1)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교과별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교사별 다양한 평가로 전환한다.
- 2)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3) 교육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학습을 정착하도록 한다.
- 4) 학습 결과의 도달점 확인 평가가 아닌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과정 중심의 평가가 중요시 되도록 한다.
- 5)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영역별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활용한다.
- 6) 수행 평가의 평가 과제 및 관점은 학년별 수행평가 기준안에 의해 평가한다.
- 7) 평가는 학생의 이해를 위한 자료와 교수·학습지도의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3 운영 방법

가. 운영 기간 : 2023. 3. 2 - 2024. 2. 28.

나. 운영 대상 및 분야

- 1) 운영 대상 : 전 학년(1-6학년)
- 2) 운영 분야 : 교과학습발달, 행동발달, 창의적 체험활동

다. 운영 내용

- 1) 교육과정 중심의 성장평가 체제로 전환하여 시행
- 2) 교과특성을 반영한 실험, 실습, 체험, 참여도, 글쓰기, 프로젝트, 토론 등 다양한 수업 방법과 연계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활성화
- 3)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4) 학생의 성장과 학습 능력을 알 수 있는 성적 통지
평가결과는 연 2회 통지 및 학부모 상담주간 실시 등으로 학생의 정확한 학습 성취 안내

4 기대 효과

- 가. 평가 자체가 배움의 과정에 포함되는 성장 중심의 평가관 정립
- 나. 평가 방법의 다양화 및 교사의 평가 자율권 존중을 통해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 배양
- 다. 체계적인 가정 통지의 혁신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관리 태도 신장 및 학부모의 학생발달상황 이해도 신장
- 라. 학급 교육 과정 중심 자율 평가 체제,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 평가 혁신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경쟁력을 강화



선행학습금지법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 추진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의 문제점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하여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마. 적용의 배제

-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나, 영재교육기관, 조기진급자, 적용배제교과(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적용되는 교과: 국어, 수학, 통합교과
- 초등학교 3~6학년에서 적용되는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영어

4.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관련 영상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자료마당)-(공교육정상화법 홍보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